보험법 리뷰
보험법 동향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백영화 연구위원

요 약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였음.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있어서는, 플랫폼의 특성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 및 상품 범위 제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의무화, 수수료 제한, 소비자 안내 강화,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과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왔음
  - 2022년 8월 소비자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을 허용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1)]
  - 2022년 11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2)]
  -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로 TF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4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음[3)]
-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며, 이에 2023년 7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함[4)]
  - 이하에서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음

○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총 11개의 플랫폼 사업자[5)]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8. 23), "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11. 9),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및 주요 성과"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4. 6),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는 보험,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7. 19),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5)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전자금융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이 이에 포함됨)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금지되어,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
-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별도의 신고 없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 **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플랫폼의 특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 공정경쟁 질서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과되었음**

- 우선,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 및 취급 상품 범위를 제한함
  -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장점은 발휘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행위'로 제한하였으며, 그 이후의 설명, 청약, 보험계약 체결, 사후 관리 등은 업무 가능 범위에서 제외됨
  -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 기존 모집채널에 미치는 영향,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CM) 상품에 대해서만 비교·추천을 허용함
  - 비교·추천 대상 상품 종목과 관련해서도, 상품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상품(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실손보험)과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함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 사전 검증 의무화, 정보 보호 강화, 수수료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함
  -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전에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 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함
  -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정보보호 상시평가제[6]를 적용하도록 함
  -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 한도를 설정함[7]
  - 보험회사와의 위탁 계약별로 계약 실적에 비례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동일 금액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보험상품의 계약 주체는 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보험회사이며 해당 보험회사에서 상품 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함
  -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와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
- 또한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특정 보험회사 집중 및 플랫폼의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비스 출시 후 반기별로 모집실적 및 수수료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함
  - 플랫폼이 보험회사에 대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

---

6)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상 정보보호항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금융보안원에 제출함
7) 단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 장기보험은 저축성의 경우 대면 계약체결비용의 약 15%, 보장성의 경우 약 20% 이내로 제한함

- 보험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수수료 부과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및 편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

○ 보험회사와 플랫폼의 전산 구축, 상품 개발 등을 거쳐 2024년 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며,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참여 보험회사와 플랫폼 간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함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출시일로부터 2년) 동안 운영 경과 등을 분석하여 연장 및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임